

특 허 법 원

제 2 3 부

판 결

사 건 2018나216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이양우

피고, 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규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56569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4. 19.

판 결 선 고 2019. 5.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6,490,000원 및 그 중 99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5.부터, 2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2.부터 각 2019.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는 26,006,451원 및 그 중 506,451원에 대하여는 2017. 1. 15.부터, 2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1.부터 각 2019.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D는 26,590,000원 및 그 중 1,09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5.부터, 2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1.부터 각 2019.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 가운데 1/1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원고에게, 피고 B은 29,890,000원, 피고 C는 29,406,667원, 피고 D는 29,9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sup>1)</sup>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지위 및 등록서비스표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경영컨설팅, 식자재유통업을 운영하고 있고(갑 제1호증),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일본식도시락음식점업, 일본식돈까스음식점업, 초밥전문음식점업'을 지정서비스로 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F호, 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를 출원하여 2010. 5. 19. 등록하였고(갑 제2호증의 1, 2, 3), 위 'G'의 표장을 사용한 도시락 상자(외피)와 도시락 용기(내피)에 관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2009. 7. 10. 도시락 용기(내피)에 관한 디자인을 등록(등록번호 제H호)하고 2009. 10. 15. 도시락 상자(외피)에 관한 디자인을 등록(등록번호 제I호)하였다[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가맹계약 체결

1) 원고(가맹본부)는 ① 2016. 2. 16. 피고 B(가맹점사업자)과 'G 안산점'에 관하여, ② 2016. 7. 21. 피고 C(가맹점사업자)와 'G 수지점'에 관하여, ③ 2016. 1. 16. 피고 D

1) 피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취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본문 기재와 같이 선택한다.

(가맹점사업자)와 'G 작전점'에 관하여, 각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특허 등을 사용하여 G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에 관한 가맹계약들(이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공통되는 계약조항(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 한다)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가맹본부”라 함은 G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G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③ “가맹점운영권”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을 경영하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 ④ “가맹금”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점운영권 부여에 대한 대가,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권 사용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가맹점 개점을 위한 경영지원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⑥ “물품”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품, 상품, 기물 등의 일체를 말한다.

**제5조(가맹점운영권의 부여 등)**

- ① 가맹점사업자는 본 가맹계약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본 계약서에서 정한 가맹점을 운영할 권리
  - 2.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특허 등을 가맹점운영권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G 가맹사업 내에서만 유효하다.

**제12조(가맹금)**

- ④ 가맹점사업자는 로열티 명목으로 매월 일금 일십만 원(W100,000)<부가세별도>을 익월 5일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개점 전까지 로열티 지급을 위한 자동이체 신청을 완료하고 증빙 서류를 가맹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로열티는 소멸성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제21조(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 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 공급받아야 하며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자체 구입할 수 없다.
- ② 가맹본부는 영업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공급받을 물품의 종류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손해배상)**

-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⑥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보상금(지체일수 × 100,000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5조(계약의 해지)**

- ③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계약해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의 종료시까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 ①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며(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 등 인터넷상의 사용도 포함), 가맹본부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자료(계약서, 매뉴얼 등)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전 항의 철거·원상복구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가맹계약 해지통지**

피고들은 각각 2016. 12. 13. 원고에게 '원고가 프랜차이즈 경험에 미숙함을 보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는 약정의 목적 달성 불이행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이 해지통지서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3항에 의해 서면통지 1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의 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해지통지서들은 그 다음날인 2016. 12. 14.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은 2017. 1. 15.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당심 제2차 변론조서 참조).

#### 라.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한 등록취소심판 사건의 경과

1) K은 2016. 11. 2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서비스표는 그 지정 서비스업에 대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7. 12. 19. 이 사건 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을 하였다(특허심판원 2016당3748호). 그러나 특허법원은 2018. 6. 15. 원고가 가맹점들을 통해 가맹점들 내부의 주방에서 음식물을 조리해서 고객들에게 배달하는 방식으로 영위한 사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서비스표는 원고에 의해 그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였으며(갑 제12호증, 특허법원 2017허8442호), K이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후11056호).

2) 한편 K은 2018. 3. 1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서비스표는 통상 사용권자인 주식회사 E에 의해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지 않은 서비스업에 사용됨으로써 K이 권리를 보유하는 상표와 출처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서비스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8. 6. 29. 'K의 위 상표가 특정 출처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없어 서비스업의 품질에 대한 오인이나 출처의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K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갑 제14호증, 특허심판원 2018당77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11, 12, 14호증, 을 제1, 5,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의 해지 통지에 따라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서비스포가 부착된 간판 등을 철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31조 제6항에 따라 위 간판 등을 철거할 때까지 일 100,000원으로 계산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매월 100,000원의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계약체결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출되는 각 지연보상금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해지일인 2016. 12. 12.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9. 26. 까지 289일 동안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한다) 및 로열티의 합산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가) 피고 B

(1) 지연보상금:  $100,000\text{원} \times 289\text{일} = 28,900,000\text{원}$

(2) 로열티:  $100,000\text{원} \times (9\text{월} + 27\text{일}/30\text{일}) = 990,000\text{원}$

-계약체결일: 2016. 2. 16.

-계약해지일: 2016. 12. 12.

(3) 합계액[(1)+(2)]: 29,890,000원

#### 나) 피고 C

(1) 지연보상금: 100,000원×289일=28,900,000원

(2) 로열티: 100,000원×(5월+2일/30일)=506,667원

-계약체결일: 2016. 7. 11.

-계약해지일: 2016. 12. 12.

(3) 합계액[(1)+(2)]: 29,406,667원

#### 다) 피고 D

(1) 지연보상금: 100,000원×289일=28,900,000원

(2) 로열티: 100,000원×(10월+27일/30일)=1,090,000원

-계약체결일: 2016. 1. 16.

-계약해지일: 2016. 12. 12.

(3) 합계액[(1)+(2)]: 29,990,000원

####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17. 1. 9. 'G' 가맹사업의 가맹본부를 원고 개인에서 주식회사 E로 전환하였고, 원고의 개인사업자등록 또한 말소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제기 시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결여되어 있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서비스포의 등록은 특허심판원의 심결로 인해 취소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맹계약 제12조 제4항에 따른 로열티 지급의무 및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



용 중단 및 철거의 목적이 되는 지식재산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L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과 이 사건 서비스표권 등에 관한 50% 지분권자이다. 따라서 원고가 L의 동의없이 체결한 이 사건 각 가맹계약과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청구는 효력이 없다.

4)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물품공급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해지에 관한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가맹점들의 간판 등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관하여 L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아 피고들이 L, K으로부터 손해배상 등 청구를 당할 위험을 초래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의 50% 지분권자와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6) 피고들의 계약 위반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연보상금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 **3. 판단**

#### **가. 피고들의 원고적격 관련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

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만 피고들의 주장을 본안에 관한 청구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9. 주식회사 E를 설립하고 그의 앞으로 이 사건 서비스포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G' 가맹사업의 가맹본부를 원고 개인으로부터 주식회사 E로 전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주식회사 E 등 타에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1) 지연보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관해 2017. 1. 15.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가맹점사업자인 피고들은 그 때로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포가 부착된 간판을 철거하는 등 가맹본부인 원고의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2017. 10. 12.경까지 각자의 영업점에서 이 사건 서비스포가 부착된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조항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 1. 1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포가 부착된 간판을 철거하기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7. 9. 26.

까지 총 255일간 일당 100,000원으로 계산된 25,500,000원을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로열티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12조 제4항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12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 해지된 2017. 1. 15.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6. 12. 12.까지 월당 100,000원으로 계산된 아래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린다).

가) 피고 B:  $100,000\text{원} \times [9\text{월} + (27\text{일}/30\text{일})^2] = 990,000\text{원}$

-계약체결일/ 로열티 정산일: 2016. 2. 16./ 매월 15일

-최종정산일: 2016. 12. 12.

나) 피고 C:  $100,000\text{원} \times [5\text{월} + (2\text{일}/31\text{일})^3] = 506,451\text{원}$

-계약체결일/ 로열티 정산일: 2016. 7. 11./ 매월 10일

-최종정산일: 2016. 12. 12.

다) 피고 D:  $100,000\text{원} \times [10\text{월} + (27\text{일}/30\text{일})] = 1,090,000\text{원}$

-계약체결일/ 로열티 정산일: 2016. 1. 16./ 매월 15일

-최종정산일: 2016. 12. 12.

## 다.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2) 2016. 11. 16.부터 2016. 12. 12.까지의 27일에 대하여 발생하는 로열티 부분을 일할산정하기 위한 부분이다. 11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일할산정의 모수를 30일로 하였다(피고 D에 대한 계산 부분에 있어서도 같다).

3) 2016. 12. 11.부터 2016. 12. 12.까지의 이틀에 대하여 발생하는 로열티 부분을 일할산정하기 위한 부분이다. 12월은 31일까지 있으므로 일할산정의 모수를 31일로 하였다.

1) 피고들은 특허심판원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지연보상금)의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등록취소 여부는 이 사건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등록취소심판과 관련한 분쟁은 모두 원고가 승소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은 'L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과 이 사건 서비스표권 등에 관한 50% 지분권자임에도 원고가 L의 동의없이 체결한 이 사건 각 가맹계약과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청구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들이 제출한 원고와 L 사이의 지분계약(을 제4호증)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원고와 L 사이에 내부적인 권리, 의무 정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계약 이행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물품공급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이 위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을 제9, 10, 11호증은 피고들이 아닌 다른 가맹점들에 관한 문자메시지나 녹취록으로서 피고들에 대한 물품공급 등이 제대로 이

행되지 않았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공급 등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지연보상금 등의 청구금액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거나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해지 경위, 계약 위반의 내용과 기간, 태양,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지연보상금 등의 청구금액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자로서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하였다거나, 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금전지급의무의 내용**

1) 피고 B은 원고에게 지연보상금 25,500,000원에 로열티 990,000원을 더한 26,490,000원 및 그 중 로열티 99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매월 로열티 정산일의 익월 5일,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12조 제4항 참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15.부터, 지연보상금 25,5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12.부터, 각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1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지연보상금 25,500,000원에 로열티 506,451원을 더한 26,006,451원 및 그 중 로열티 506,451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15.부터, 지연보상금 25,5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11.부터, 각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1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는 원고에게 지연보상금 25,500,000원에 로열티 1,090,000원을 더한 26,590,000원 및 그 중 그 중 로열티 1,09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 15.부터, 지연보상금 25,5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11.부터, 각 피고 D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1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지연보상금에 대하여 2017. 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 지연보상금의 이행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들에게 지연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지연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7. 1.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우성엽

                 판사      이진희